

#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## 제1조 (목적 및 적용규정)

본 시설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 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 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(적용규정)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.

(시설운영) 시설의 운영은 다음 각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.

쾌적한 시설환경의 유지.관리

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

입소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

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

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

## 제2조 (위치 및 업무)

본원은 "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2길 52-6 (창동)" 에 위치하며 다음 각호의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한다.

1. 치매,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와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한다.
2. 입소자의 건강유지,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한다.

## 제3조 (사업)

본 시설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노인요양사업 수행을 수행한다.  
노인의료복지(노인요양시설)사업

## 제4조 (적용범위)

본 시설은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5조 (규정 준수 의무)

본 시설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,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.

**제6조 (입소정원 및 모집방법)**

- ① **선한노인전문요양원**의 입소정원은 **39인**을 정원으로 한다.
- ② 입소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 - 1.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자와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
  - 2. **노인복지법 제28조**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소를 요청한 자
  - 3.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
  - 4.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
  - 5.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- ③ 대표자(또는 시설장)는 수급자의 원활한 모집을 통하여 정상적 시설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.
  - 1. 시설의 홈페이지나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하여 수급자를 확보한다.
  - 2. 지역사회 유관기관, 사회복지전문요원, 재가복지시설, 경로당, 지역단체의 모임, 지역단위 경로행사, 대상자별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.
  - 3. 시설소식지발간, 입소안내 홍보물제작, 각종 언론매체나 생활정보지 등 수급자 입소 안내 광고를 통하여 확보한다.

**제7조 (입소기간)**

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같음한다.

**제8조 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**

- 1. 계약목적
  - 1) 시설과 이용자(입소자),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  - 2)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“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”(이하 “계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  - 3)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.
    - ① 계약 당사자
    - ② 계약기간
    -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    -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

- 4)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)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- 5)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.

## 2. 계약기간

- 1)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- 2)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3)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
- 4)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.
  -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  -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- 5)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- 6)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## 3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(2025. 01. 01 적용기준)

| 구 분                |          | 금액(원/%) | 내 역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|
| 장기요양<br>보험급여<br>항목 | 공단지원금    | 총액의80%  |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0%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.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개인부담금    | 총액의20%  |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, 경감대상자는 40% 또는 60%경감될 수 있음 |
| 비급여<br>항목          | 식사재료비    | 4,000원  | 1일 12,000원 (1일 3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간식       | 1,000원  | 1일 2,000원 (1일 2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상급침실 이용료 | 1인실     | 1개월 150,000원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2인실     | 1개월 100,000원  |
| 이미용료               | 무료       | -       |   |

3-1. 등급별 본인부담금 납부금액

| 등 급    | 2025년<br>1일 수가 | 본인부담금<br>20% | 경감(18.08.01부터) |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
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2%            | 8%    |
| 1 등급   | 90,450         | 18,090       | 10,854         | 7,236 |
| 2 등급   | 83,910         | 16,782       | 10,069         | 6,712 |
| 3~5 등급 | 79,240         | 15,848       | 9,508          | 6,339 |

\*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

1) 1개월 입소 비용 계산법

(예) 1등급이신 수급자가 30일을 계실 경우

〈 30일 \* 1등급 1일 입소수가 〉 \* 20% = 본인 부담금

본인부담금 + 비급여 항목(식재료비+간식비) = 한달 시설 입소비용

**제9조 (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)**
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(입소자)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

1.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1)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(단, 병·의원 입원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- 2)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3)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- 4)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
- 5)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
- 6) 기타 "을"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

2. 입소자의 의무

- 1)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2)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- 3)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- 4)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5)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- 6)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### 3. 보호자의 의무

- 1)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- 2)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
- 3)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4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5)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.퇴소 절차,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

### 4. 입소자의 권리

- 1)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
- 2)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
- 3)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- 4)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
- 5)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, 존경을 받을 권리
- 6)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
- 7)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
- 8) 본 시설에서 생활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

### 5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

- 1)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  -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  -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
  -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
  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  -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.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
  -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### 6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

- 1)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  -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 - ②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 - ③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  - ④ 입소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- ⑤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⑦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-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⑨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
- ⑩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
- ⑪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있는지 참관할 권리
- ⑫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**제10조 (계약의 해제)**

1.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.
2.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1)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  - 2)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  - 3)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  - 4)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  - 5)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  - 6)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  - 7)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  - 8)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  - 9)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  - 10)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**제11조 (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)**

**(이용료 등)**

1.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.
2.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.
3.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한다.
4.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.

### **(이용료 변경 및 절차)**

1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  - 1)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
  - 2)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
  - 3)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
  - 4)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
2.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.
  - 1)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.
  - 2)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.
  - 3)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.
  - 4)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,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- 5)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### **(이용료 납부)**

1.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2.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.
3.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,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. (전산시스템 사용시 적용)
4.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**(이용료 반환)**

시설은 입소자가 퇴소할 경우 월 퇴소당일을 제외하고 남은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10일 이내에 반환금을 수취인에게 환불하여야 한다.